

※ 본 안내문은 오픈 전 참고용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

구분	내용				
<p>신청자격</p>	<p>※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 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) ③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자 <p>※ 단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11.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</p> <p>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1 1075 1481 1182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11 1075 895 1131">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</th> <th data-bbox="895 1075 1481 1131">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11 1131 895 1182">전년도 소득</td> <td data-bbox="895 1131 1481 1182">전년도 소득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자산기준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억 3,1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</p> <p>※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기준 85㎡ 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합니다.</p> <p>※ 2023.11.10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</p>	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	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	전년도 소득	전년도 소득
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	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				
전년도 소득	전년도 소득				
<p>청약통장 가입요건</p>	<p>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</p>				
<p>당첨자 선정방법</p>	<p>20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세대수의 5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%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 ③ 남은 주택(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④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				

구분	내용								
소득기준	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~ 6,509,452원	~ 7,622,056원	~ 8,040,492원	~ 8,701,639원	~ 9,362,786원	~ 10,023,933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~ 120% 이하	6,509,453원 ~ 7,811,342원	7,622,057원 ~ 9,146,467원	8,040,493원 ~ 9,648,590원	8,701,640원 ~ 10,441,967원	9,362,787원 ~ 11,235,343원	10,023,934원 ~ 12,028,720원
	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초과 ~ 140% 이하	6,509,453원 ~ 9,113,233원	7,622,057원 ~ 10,670,878원	8,040,493원 ~ 11,256,689원	8,701,640원 ~ 12,182,295원	9,362,787원 ~ 13,107,900원	10,023,934원 ~ 14,033,506원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~ 160% 이하	7,811,343원 ~ 10,415,123원	9,146,468원 ~ 12,195,290원	9,648,591원 ~ 12,864,787원	10,441,968원 ~ 13,922,622원	11,235,344원 ~ 14,980,458원	12,028,721원 ~ 16,038,293원
	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4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 충족)	9,113,234원 ~	10,670,879원 ~	11,256,690원 ~	12,182,296원 ~	13,107,901원 ~	14,033,507원 ~
	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4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 충족)	10,415,124원 ~	12,195,291원 ~	12,864,788원 ~	13,922,623원 ~	14,980,459원 ~	16,038,294원 ~
	※ 기준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 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60%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 ※ 상위소득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								

■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
부동산 (건물 + 토지)	3.31억원 이하	건축물	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
		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자 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업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